

변경 대비표

□ 대상펀드명 : 트러스톤 공모주알파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 변경 사항 : ①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 →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
 ② 제12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③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④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 효력발생일 : 2024. 7. 24.

□ 변경 내용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보호되지</u> 않으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 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u>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u> 않습니다.
요약정보			
-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u>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의 90%이하를 채권에 투자하고, 30% 이하를 공모주 등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 변동위험,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에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보호되지</u>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의 90%이하를 채권에 투자하고, 30% 이하를 공모주 등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 변동위험,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에



트러스톤자산운용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비용	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 제 12 기 재무제표 확 정에 따른 갱신	-	<u>2024. 5. 31. 기준</u> <u>2024. 6. 10. 기준</u>
투자실적 추이(연평균 수익률)	제 12 기 재무제표 확 정에 따른 갱신	-	<u>2024. 6. 10. 기준</u>
운용전문인력	최근 기준으로 기재	-	<u>2024. 6. 30. 기준</u>
투자자 유의사항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 정 개정사항 반영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 법」에 따라 <u>예금보험공사가</u> <u>보호하지</u> 않는 실적배당상품 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 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 법」에 따라 <u>보호되지</u>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투자위험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 정 개정사항 반영	원본손실위험 : 이 투자신탁 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 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 라 <u>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u>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 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 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 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 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 니합니다.	원본손실위험 : 이 투자신탁 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 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 라 <u>보호되지</u> 않습니다. 따라 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 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 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 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 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최근 기준으로 기재	-	<u>2024. 6. 30. 기준</u>
5. 운용전문인력 나. 운용중인 집합투자기 구에 관한 사항	최근 기준으로 기재	-	<u>2024. 6. 30. 기준</u>

5. 운용전문인력 다.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최근 3년 경과내역 삭제	주식 부책임용역 : 이경은 (2020.9.10~2021.3.18)	〈삭 제〉
10. 집합투자기구의 투 자위험 가. 일반위험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 정 개정사항 반영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 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 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 자보호법에 따라 <u>예금보험공</u> 자보호법에 따라 <u>보호되지</u> 않 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 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 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 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 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 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 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 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니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 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투자위험등급 산정기 준 변경	표준편차 : 4.92% 〈신 설〉	<u>일간 수익률의 최대 손실 예 상액(97.5% VaR 모형 사 용) : 5.66%</u> - 위험등급 변경 내역 : <u>2024.7.24 : 투자위험등급 산정 기준을 최근 결산일 기 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 의 표준편차”에서 “일간 수익 률의 최대 손실 예상액” 기준 으로 변경</u> 〈트러스트자산운용 집합투자 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 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 2) 설정된 후 3년 경과된 경 2) 설정된 후 3년 경과된 경 우 우 <u>표준편차</u> <u>위험등급 기준표(97.5% VaR 모형 사용)</u>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1) 환매방법 및 절차, 환매 신청 가능시간 <신 설>	1) 환매방법 및 절차, 환매 신청 가능시간 <u><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 수수료 부과 여부></u>
나. 환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	-	<u>2024. 5. 31. 기준</u>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제 12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u>2024. 6. 10. 기준</u>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제 12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u>2024. 6. 10. 기준</u>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제 12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u>2024. 6. 10. 기준</u>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	제 12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u>2024. 6. 10. 기준</u>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최근 기준으로 기재	-	<u>2024. 6. 30. 기준</u>
가. 회사개요	회사연혁 추가	-	<u>2022.11 종합자산운용사 전환</u>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최근 기준으로 기재	-	<u>2024. 6. 30. 기준</u>
라. 운용자산 규모			